

■ 교육

# 조기전형 선발 인원 늘리는 명문대

## 인재확보 경쟁, 안정적 학사·재정 운영 위해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시전형보다 조기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yFocus(ivyfocus.com)에 따르면 각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에서 조기전형인 ‘얼리 디시전 (ED·Early Decision)’ 과 ‘얼리 액션 (EA·Early Action)’ 지원자의 비중을 갈수록 높이고 있어 정시전형 합격률은 그만큼 더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올 가을학기 하버드대 신입생 조기전형 결과에서 6,630명의 지원자 가운데 964명이 합격해 14.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조기전형 합격률로는 역대 최저치였지만 여전히 지난해 정시전형 합격률 5.2%의 세 배에 육박한다. 하버드대의 올해 정시전형 합격률은 3.3%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일대도 조기전형 지원자 합격률이 17.1%로 정시전형 지원자 합격률 5%의 세 배가 넘었다. 이와 같이 많은 명문대들이 신입생의 40% 이상을 조기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에 2,270명의 조기전형 지원자와 2만 명이 넘는 정시전형 지원자가 몰린 다트머스대는 선발 인원의 절반가량을 조기전형을 통해 뽑을 계획이다. 또 노스웨스턴대학은 지난해 9월 입학한 신입생의 53%를 조기전형에서 뽑았으며 밴더빌트대학도 절반 이상을 조기전형으로 선발했다.

대학들이 조기전형 입학생의 비율을 높여려는 이유는, 조기전형의 경우 합격자가 실제 등록으로 대부분

연결되기 때문에 신입생 정원의 상당 부분을 조기전형 합격자로 채워 놓는 것이 학사·재정 운영에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실제 등록할 때까지 기다려야 신입생 규모 등이 결정되는 정시전형 학생 선발도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또 우수한 지원자가 조기전형에 주로 몰리기 때문에 타 대학과의 인재 확보 경쟁 측면에서도 조기전형 선발을 늘리고 있다. 저소득층·소수계 지원자에게 장학이 된다며 2006년 ‘얼리 디시전’ 옵션을 포기했던 하버드·프린스턴대는 경쟁 명문대에 우수 학생을 계속 뺏기자 결국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딘가로 진학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기전형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 진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정시전형 합격률이 한 자리 수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조기전형에 지원할 동기가 더욱 강해졌다는 것. 지난해 브라운·다트머스·듀크대 등에서는 합격할 경우 반드시 진학해야 하는 ‘얼리 디시전’ 지원자의 증가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또 조기전형 지원자는 합격하지 못해도 보류(defer) 결정을 받으면 추후 정시전형 지원자와 함께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공통지원서(Common Application)를 사용한 학생의 50%가 최소한 한 곳 이상 대학의 조기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률 칼럼

# 새로운 ‘90 day rule’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법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90-day rule이라는 새로운 rule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단 미국에 들어가서 신분을 변경하는 계획을 추후 세워야 겠다…… 미국에 들어가는게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미국행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30/60 day rule’ 이라는 이민국의 룰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지도 모릅니다. 이 룰은 미국국적이 아닌 사람이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 1) 30일 이내에 신분 변경(AOS: Adjustment of Status 또는 COS: Change of Status)을 시도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입국 당시에 자기가 미국에 입국하는 intention(의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변경도 통하지 않습니다.
- 2)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미국 정부가 그 의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는 있는 정황이긴 하므로 만일 문제를 삼는다면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 변경 진행은 가능했습니다.
- 3) 60일 이후에 신분 변경 시도: 미국 이민법적으로 입국 당시와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입국 당시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30/60 day rule이 이번에 새롭게 ‘90-day rule’ 로 대체되었습니다. 위의 30/60 day rule의 설명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본다면, 이 새로운 rule이 우리 동포사회에 좋은 뉴스가 아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60일이 지난 후에, 조금 급하게 진행한다면 30일 후에도 신분 변경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90-day rule하에서는 이 기간이 90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 상호 체결되어 90일 이내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그 90일 안에 결혼영주권을 신청함으로써 신분 변경을 시도한다면, 이전 30/60 day rule에서는 30/60일을 보낸 후 남은 60/30일 동안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0일이 경과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90일이 지나고 나면 비

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거 미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The Foreign Affairs Manual (FAM) guidance에 의하면 우선 비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입국 의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의 고령의 부모님께서 관광차 미국에 오셨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돌아갈 수 없게 된 경우 부모님께서 입국할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분 변경을 해야만 하는 신빙성 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미국에 있는 애인을 보러 잠시 미국에 왔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겨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에서의 의도가 신분 변경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법에서는 misrepresentation이 반드시 willful(악의로, 알면서)하고 material(중대)했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INA sec 212(a)(6)(C)(i). 그러므로, 만약 입국 당시에 입국 의도에 대한 잘못된 진술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 관계를 해칠 만한 중대한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FAM이나 이민국의 Policy Manual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좀 더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처를 위해서는 이민법(INA)에 근거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90-day rule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법법무법인의 합영심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합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